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35
----------	------

제출연월일 : 2017. 3. 31.

제출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3. 근거법규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2017. 2. 13. ~ 3. 6.(의견제출 없었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32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중 세무1과장, 민원지적과장, 경제일자리과장, 도시과장, 디자인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생략)</p> <p>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사람</p> <p>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2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u></p> <p><삭제></p>

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35)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7. 3. 31.(금)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4. 5.(수)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4. 14.(금)

2. 제안설명 요지(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가.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촉대상자 정비(안 제2조제3항제2호)
 - (현행)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 (개정)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상위법령에 위원회 구성 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안 제2조제3항제3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영환)

-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정비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